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9.01.11(금) / 총1매(본문1)
담당 부서	부동산평가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한정희, 사무관 김세묵 • ☎ (044) 201-3425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국토교통부는 일관되게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- 국토교통부장관은 「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·평가 및 최종 결정·공시 주체로서, 현행 공시가격을 공정한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국토부의 고유권한이자 책무입니다.
 - 민간 감정평가사는 국토부로부터 표준지공시지가 조사·평가 업무를 의뢰받아 지역개황 파악, 토지특성 및 적정가격 등을 조사·평가하고 있으며, 공시가격을 최종 결정하는 권한은 없습니다.
 - 아울러, 국토부는 그간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것처럼,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.
- 한편, 세금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회에서 정한 법률로써 정해집니다.
 - 다만, 정부는 법률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사·평가 및 결정하고 세금 부과 과정에서 법률에서 정한대로 공시가격을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.
 - 아울러, 모 고위공무원이 “나머지는 큰 해당사항 없으니 신경들 끄시라” 라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조선일보, 1.11(금).) >

◆ 국토부의 세금갑질..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김세목사무관(☎ 044-201-342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